

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 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군사혁명 위원회의 공약과 함께 유가족과 관련자들을 이적 행위자로 몰았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을 ‘요시찰 대상’으로 지목하여 구속, 실형 선고 등으로 탄압했다. 학살과 관련한 정부 기록을 모두 불태워 진상을 철저히 은폐한 덕분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문제는 다시 수면 아래로 잠겨 버린다.

그 후 좌익 관련 피학살자 유족 당사자들은 연좌제나 국가 보안법과 같은 구조화된 제도 속에서 오늘날까지 늘 철저한 사상적 억압과 통제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장한 유족들의 자식들은 학교에서 반공 응변대회, 반공 영화 슬라이드 상영, 반공 표어짓기, 반공 글짓기, 반공 포스터 그리기, 반공 미술대회뿐 아니라 각종 규탄대회, 반공 강연회, 웨기대회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반공 교육을 받으며 컸다. 그래서 결국 유족들은 반공 교육으로 세뇌된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가족간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양기순 할머니는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물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에도 자식들에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최근에 양기순 할머니의 유족회 활동 참가로 진실을 알게 된 자식들은 ‘아직까지는 말조심’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유족들이 유족회 활동에 참가하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도 ‘아직 통일이 안 되었는데, 정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 자슥들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이다. 결국 유족들이 “나만 마음 아프면 되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전쟁을 체험한 부모 세대나 전후 세대 모두에게 빨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캠 플렉스로 작용한 것이다.

가족간의 단절만이 아니라 박정희와 그 이후 군사 정권은 끊임없이 공안 사건을 조작해 위기 국면에서 국가의 물리적 폭력

을 정당화했고, 그러한 각종 공안 사건은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에게 또 다른 전쟁 발발의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사회적으로 내면화시켰다.

이와 같이 반공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면서 강화나 고양 지역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직도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 대다수의 유족들이 무서워서 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서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 친척들은 뭐 하러 그런 걸 들춰 내느냐며 싫어했어요. 죄없이 간 양반…… 친척들 말 한 마디도 협조하지 않았어요.” (서영선, 강화)

친척들이 ‘뭐 하러 그런 걸 들춰 내느냐’며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처럼 유족이 아닌 사람들도 전쟁 때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한 폭력처럼, 다시 자신들에게 그 피해가 올까 봐 진상 규명에 소극적이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 ‘학살’에 관한 기억은 서로 공유해서는 안 되는 금기였던 것이다.

#### 4. 남은 사람—조국을 버려야 했던 사람들

전쟁과 학살은 50여 년 전 한반도에서 끝난 일이 아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 조선인 가운데 제주 4·3 사건을 피해 조상 대대로 뿌리 내리고 살던 이 땅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많다.

조씨는 1915년 제주도 북제주 애월면에서 3남 4녀 가운데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과 식민지라는 상황에



제주 4·3 항쟁의 상흔을 지니고 있는 옛 곤ول터

도 불구하고 당시 보통학교에서 어렵게 공부를 마치고,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사카로 건너가서 주경야독하면서 야간 상업학교를 거쳐 관서대학에 입학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조씨는 일본의 조선인 차별에 반발하여 조선 유학생학회를 만드는 등 활동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1942년 대구에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그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 토벌대를 피해 혼자 다시 오사카로 건너갔다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대구의 가족과 떨어진 채 일본에서 조선 국적을 가진 재일 조선인으로 다시 재혼하여 정착한 조씨는 그 이후 한국의 가족과는 상봉도 못하고 살다가 1969년 사망했다.

대구에 어머니와 남겨진 조씨의 아들은 4·3 사건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아버지 때문에 제주도의 친척들에게도 돌아가지 못하고 혼자 서울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컸다고 한다. 그는 어머

니가 일찍 죽자, 친척이 있고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고아로 컸던 것이다. 물론 제주도에 남은 조씨의 형제들도 몇몇은 토벌대를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조씨 때문에 이민을 가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해야 했다.

조씨와 같이 제주 4·3 사건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 사회 안에서도 비 '국민'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본명으로 사회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참정권도 없었으며, 해외 여행에서부터 부동산 매매, 금융기관의 융자, 신용카드 매입, 비디오 대여 등 일상적인 유형무형의 굴욕감 속에서 살아왔다. 민족학교 출신의 재일 조선인의 경우는 일본 사회에서 학력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재일 조선인들이 아는 재일 조선인이나 가족들이 경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곤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일본 경기가 불황이 되면 지금까지 재일 조선인이 가장 먼저 버림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제적 차별 속에서 빨갱이로 학살당한 유족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재일 조선인들도 가족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조차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대해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전후 우리 사회 안에서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간 이들은 기억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했지만,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의해 조작된 다수의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은 한국 사회 안에서 재일 조선인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줌과 동시에 재일 조선인은 또 다른 '빨갱이'가 되었다.

결국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국군이나 경찰, 우익 단체 등에 의해 학살당한 유족들이 한국 사회 속에 오늘날까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존재처럼 취급되었듯이, 재일 조선인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국으로부터 잊혀졌다.

일본의 조씨의 자식들도 199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한국에 남겨진 이복형제와 제주의 친척들을 생전 처음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50여 년 전에 있었던 전쟁과 학살은 오늘날까지도 제주에 대구에, 서울에 일본에 살아 남아 있다.

### 5. 죽은 사람, 남은 사람

“이산 가족들이 만나서 금강산 가는데, 저 배는 사람 싣고, 남 싣고, 사랑 싣고, 형제간 싣고 그렇게 가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그때 내가 그랬다, 죽은 사람은 참말로 못 만나도 산 사람은 어쨌거나 만나가 싶어, 내가 배 보고 실컷 울었다. 보고 싶다…… 우리 어른이 죽으면 집에 모셔다 제사 지내고 하는 건, 저거 잘 살라고 그라는 거 아니가. 죽은 사람들은 진짜 한이 맷혀가 있다면 한이 덩거리로 그대로 묻혀 있을 끼다. 그 사람들 한을 풀어 줘야 한다. 저래 놓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가 안 된다.” (박태선, 영천)

1987년 이후 군사 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 시작하면서 남북 이산 가족 상봉도 이루어지고, 빨갱이로 불리기도 했던 김대중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6년 거창 사건과 1999년 제주 4·3 사건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1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식 기록인 1960년의 ‘양민 학살 사건 진상 보고서’ 24권과 학살자 명부 및 ‘양민 학살 사건 진상 조사 위원회 속기록’이 발굴되었다. TV에서도 조금씩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소문으로 떠돌던 전국의 학살 지역 여기저기서 유골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자 유족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죽은 사람들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또한 그 기억과 함께 유족들이 살아온 삶을 통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모순과 폭력이 드러났다.

많은 유족들이 죽기 전에 살아남은 자로서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나섰다. 박태선 할머니의 ‘간 사람은 가고, 산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돼. 그게 내 의무야. 그래야 영감을 떳떳이 만나지.’라는 마음은 모든 유족들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한평생 좋은 풀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았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시위도 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밝히라고 얘기도

여의도에서 벌인 해원굿을 보며 슬픔을 이기지 못하는 유족들



할 수 있으니, 이런 시간이 있으니 그것도 고맙다. 안  
밝히고 죽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낙인이 찍히듯이 도장이  
찍힌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 가족이기 때문에…… 세상에 두  
번도 나오는 게 아닌데, 태어나는 게 아닌데…… 다른 사람들  
은 다 잘 살고 좋은데 우리는 왜…… 이런 기회가 없으면 만날  
마음이 원수같이 그렇지. 나와서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세  
월이 좋아진 거라. 나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  
다.” (박태선, 영천)

학계에서는 학살당한 사람을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  
학살자가 100만 명에 유족들까지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한국  
전쟁을 전후한 학살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살아남은 이들의 삶을 ‘운 없는’ ‘필자  
사나운’ 개인의 일로 치부해도 좋은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유골들이 첨첩이 쌓인 골짜기와 오늘날까지 가슴에 그 한과 유  
골을 묻고 살아온 유족들이 국회 앞에서 애태계 부르짖는 절규  
를 앞에 두고,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 문제를 50여 년 전에 있었  
던 과거의 일로 치부해도 좋은가?

죽은 사람과 남은 사람에 관한 유족들의 ‘말하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며, 그것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해와 위무  
를 받는 것은 죽은 혼령과 살아남은 생명이 참담한 기억의 굴레  
에서 자유로워지며 안정을 얻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다. 그  
리고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추진하는 일은 100만 피학살자의  
유족을 안고 있는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화해하는 길이며, 유린  
된 인권을 되찾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길일 것이다.

## 제5장

### 어떻게 해결돼야 하나?



## 어떻게 해결돼야 하나?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1. 민간인 학살의 개념과 그 범죄성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범죄 행위이다. 일체의 살인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다만 살인 행위 가운데 적법성 여부에 따라 범죄성이 정당화되는 경우(교전, 사형 집행)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경우(정당 방위)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쟁은 국가 또는 정치 세력 간에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무력을 수반하여 목적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이런 맥락 때문에 전쟁 시기나 내전 시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어려웠다. 국가가 자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립 목적 그 자체이다. 하지만 군, 경찰 등 공권력으로 표현되는 합법적 폭력 수단을 갖고 있는 국가가 자국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 국가의 존립 목적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당연히 불법 행위가 된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은 법률적으로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부터 전쟁이 휴전 상태에 들어간 1953년 7월 27일까지 국군, 경찰, 공무원, 유엔군, 준군사 조직의 구성원, 비정규 전투 조직 구성원, 인민군, 중공군, 북한 정권의 동조 조직에 의하여 작전 수행 또는 그 밖의 조직적 활동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희생시킨 사건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그 기점을 잡으며, 유엔군뿐만 아니라 미국 및 미 군정 당국에 의한 희생도 물론 포함된다. 즉 일체의 공권력 또는 공권력의 방조나 지원, 묵인, 지시 등에 의해서 자행된 모든 불법적인 희생 사건을 모두 민간인 학살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단순한 살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자행된다. 민간인 학살은 국가의 공권력을 갖고 있거나 실질적인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인사나 세력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적대적인 집단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절멸시키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자행한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희생된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되기 전까지는 그 사실 자체가 은폐되거나 조작되고 또한 정치적 이유로 편향되게 해석되게 된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주인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국가는 자국민의 생명을 법적 근거 없이 박탈하고도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간인 피학살자들의

억울함뿐만 아니라 그 유족들의 한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국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민간인 학살은 넓은 의미로 보면 ‘잔혹 행위’이자 ‘살인’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는 의미에서 다른 범죄보다도 더 큰 책임이 있는 문제이다. 또한 그 의도에 있어서도 한두 개인의 범죄 행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중대 범죄 행위에 속한다. 이런 범죄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행위이자 독재 정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다. 민간인 학살은 전시 또는 비상 사태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더욱 잔인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한 뒤 남과 북, 두 정부가 수립되면서 좌우 이념 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 사건이 수없이 발생했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집단 살해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유사한 중대 범죄와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런 범죄는 가해자와 책임자의 공소 시효가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어서 ‘보편적인 범죄’라고 한다.

집단 살해죄는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제노사이드 협약’에 따르면, 특정 민족, 인종, 종족, 종교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특정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특정 집단 구성원의 중대한 심신상의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를 야기할 것을 계산하고 특정 집단의 생활 터전에 고의로 해를 가하는 행위, 특정 집단 내에서 출생을 방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 특정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로 편입시키는 행위이다. 이 집단 학살죄는 특정 집단을 완전히 절멸시켜야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유족들의 한을 해결하지 않은 것은 국가 스스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한 의도를 갖고 특정 집단에 대해서 위에서 열거한 행위를 할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 민간인 학살은 비록 제노사이드 협약에서 말하는 특정 민족, 인종, 종족, 종교 집단에 대한 집단적인 살해 등의 잔혹 행위에 꼭 들어맞지는 않지만 일부 희생 사건들은 집단 학살의 사례로 보고되기도 한다.(예를 들면,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피난민 등에 대해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모두 죽여라.’라는 명령을 했다면 이것은 집단 학살죄에 해당한다.)

반인도 범죄는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된 잔혹한 범죄로 인류 양심의 공통 분모라는 인식 하에 가해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국내법에 범죄로 규정되어 있든 있지 않든, 전쟁 이전 또는 전쟁 중에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민간인에 대해서 자행

한 조직적인 살인, 절멸, 노예화, 추방, 고문, 강제 임신, 강제 이주 및 기타 비인도적 행위 또는 박해 행위를 말한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반인도 범죄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정부 수립 이후 오래지 않아 발발한 전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전쟁 범죄와도 관련이 깊다. 전쟁 범죄는 국제적인 무력 분쟁이나 내전 과정에서 대규모로 저질러진 범죄로, 1949년 제네바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및 기타 전쟁 범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죄를 말한다. 전쟁 범죄의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한데, 여기에서 몇 가지만 열거하면 민간인 및 외교관, 전쟁 포로에 대한 고의적 살인 및 민간인 자체 또는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및 민간 대상물, 즉 군사 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 과도한 민간인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서도 의도적으로 개시한 공격, 방어 능력이 없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 촌락, 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 무기를 내려놓았거나 더 이상 방어 수단이 없는 항복한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민간인 학살은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한 경우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 기관 또는 정부 당국의 관할 하에 있는 어떤 자가 자행한 살인인 '자의적 처형'은 생명권 침해의 한 예이다. 또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혹독한 처우와 처벌 등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경우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 생명권 침해가 아무리 광범위하다 하더라도 고문 및 살인 방법의 잔인성과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2. 해결의 제 차원

민간인 학살 문제는 국민의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 사회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과제이다. 즉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독재 정권과 공권력 담당 공무원들은 자의적이고도 정략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경시하여 1970년대에 의문의 죽음을 만들어 냈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 침해의 뿌리요,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 사회를 인권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디딤돌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인 학살은 과거의 문제이면서 그 해결은 오늘과 내일의 문제가 된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적 사건과 왜곡된 사례를 바로잡는 일을 일반적으로 '과거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민주주의 발전과 올바른 역사 정립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우리 사회도 군사 독재 정권을 국민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진전시킴에 따라 우리 사회 안에 있는 편향된 안보 지상주의로 국민을 희생시키거나 정치적 희생자를 만들어 냈던 과거를 청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역사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고 민주 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이기도 하다.

그런데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의 기본 과제는 과거에 권위적인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를 해결하는 일이 인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통해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들추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한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은폐되거나 왜곡된 진실을 제대로 바로잡는

것은 철저히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국가 등의 잘못된 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사건 이후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는데도 침묵하는 상태에서 국가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은 과거 청산과 관련하여 두 개의 큰 원칙을 세우고 있다. 첫째는 과거의 왜곡되거나 은폐되었던 사건의 진실을 알 권리를 현재의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진실에 접근할 권리는 지금 생존해 있는 관련자뿐만 아니라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로 국가에 대해서 일종의 청구권을 형성한다. 둘째는 현재의 사람들이 기억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가와 국민은 왜곡된 과거를 바로 알고 이를 기억함으로써 앞으로 이러한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국가적, 사회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로써 과거 청산이란 단순히 과거의 인권 유린 문제를 바로잡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오늘과 미래의 문제로 보고 있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유엔 체계 내의 개인 통보 제도의 활용과 인권 위원회를 통한 제소 방법이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여기서는 주로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국내 차원에서의 해결 방법들을 소개한다.

### 1) 진상 규명

민간인 학살 문제 등 과거 청산 문제를 국내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피해자 구제 조치를 세분화하면 원상 회복, 명예 회복, 배상 또는 보상, 책임자 또는 가해자

의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역사 교육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피해자의 배상 또는 보상의 조치를 금전적 구제라고 하고 나머지를 비금전적 구제라고 한다.

국내 차원에서 과거 청산을 하기 위한 주요 개념으로는 '국가'가 행위 주체가 되어 '공식적'으로 '진상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의 인권 시민사회 단체와 법률가, 학자들의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국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거창 신원면 학살 사건과 제주 4·3 사건, 노근리 미군 폭격 사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 운동은 민간 차원의 노력에서 국가가 직접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 헌법 체계 하에서 국가는 법치적인 질서를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가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를 국가 사무로 인식할 만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공식적'이라는 의미는 법령의 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책무를 실현하는 것을 뜻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행위가 중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과거 청산 문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민간인 학살 문제는 가해자가 공존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는 사회적 관성이 존재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유엔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상 규명을 국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보고 있다. 유엔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의 압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즉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위원들에게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와 병행하여 다른 국가 기관, 특히 과거에 가해 행위를 한 국가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첫 걸음은 독립적이고 권한을 가진 진상 규명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유엔은 진상 규명의 내용을 피해자 확인, 사망과 관련된 증거의 발견 및 보존, 가능한 증인 및 사망 관련 진술의 확보, 사망의 원인, 방법 및 시간 장소의 확정, 자연사, 사고사, 자살 및 살인 행위와의 구분, 가해자 또는 가해 혐의자의 기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유엔의 권고는 인권 유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또한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 진상 규명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2) 피해자 구제—배상·보상, 명예 회복, 진실 공표, 가해자 처벌

또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가 또는 국가 기관의 공식적인 조사 활동을 통해서 그 진상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 구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온전히 하려면 원상 회복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간인 학살 문제는 그 피해자가 이미 생명을 잃어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그 가족들은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어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상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의 해결 방법으로 금전적인 배상 또는 보상에 의한 피해자 구제 조치가 있다. 만약 진상 규명을 통해서 민간인 학살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면 국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야 한다. 또 작전 수행 등으로 정당성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거창 신원면 학살 사건의 경우 명예 회복 조치로 위령 공간 조성 사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과거 청산 문제와 관련된 배상 또는 보상 문제는 개인적인 피해 구제라는 점과 함께 사회적인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수십 년이 지난 과거의 실체를 다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한 사안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여기서 진상 규명 위원회 등이 파악한 사건만을 배상 또는 보상한다면 명백히 죽임을 당한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남아공 진실과 화해 위원회에서는 1997년 최종 보고서를 통해서 개인적인 배상 또는 보상을 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현실적으로 자금 조달이라는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사회적 합의 또는 국가의 재정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가능할 때 배상 또는 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구제 가운데 비금전적인 구제 조치를 검토해 보자. 피해자 구제 조치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우선 피해자에 대해 명예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 조치가 없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거창 신원면 학살 사건의 경우 위령 공간 조성 사업이 명예 회복 조치의 전부이다. 또한 제주 4·3 사건의 경우는 진상 보고서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이념과 관계없이 상당수가 희생되었다는 것을 국가가 공식 확인하고 현 대통령이 국가를 대신하여 비공식 행사에서 발언을 통해 과거의 국가 범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으며, 희생자를 위한 위령 공원 조성과 호적 정정 및 등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노근리 미군 폭격 사건과 같은 경우는 국가의 책임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가운데 다만 미국 정부의 유감 표명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하지만 명예 회복 조치는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피학살자의 신심상의 원상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보상이 명예 회복의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 생존자와 희생자의 가족들과 관련된 명예 회복 조치로는 재활 치료와 치료비 지원 및 필요한 경우의 생활 지원금 지급, 관련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정부 기록의 오류 시정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아울러 공식 교과서에 반영하여 그 사실을 교정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또한 명예 회복 조치는 이미 국가의 공식 기관을 통해서 진상 규명 조치가 완료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책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공식 사과도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하지만 명예 회복 조치라는 것은 이미 장기적으

로 침해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명성 및 명예를 어떻게 원상 회복시키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맥락에서 더 깊숙이 검토될 점이 많다.

비금전적인 구제 조치에서 중요한 사항은 진실의 공표이다. 이것은 진상 보고서라는 물리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의 마음속에 기억하게 할 정도의 공표를 의미한다. 민간인 학살의 진실에 대한 지식을 공식 국가 기관이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은 과거 칠레 진실 위원회(1990년)가 최종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일이며, 그들의 친척과 지인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며, 그 손상을 시정하는 일”인 것이다. 따라서 진실을 공표한다는 것은 단순히 민간인 학살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시 피학살자들의 존엄성과 생명권의 중요함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재사회화의 과정이다. 진실의 공표가 진정이었는지의 여부는 지금의 우리 사회 사람들이 그 진실을 기억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위령 사업과 발간 사업,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포함된다.

비금전적인 형태의 구제 조치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명예 회복과 진실의 공표 등과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인데 반해, 가해자 또는 책임자를 처벌함으로써 간접적, 반사적으로 구제 조치를 취하는 소극적인 구제 조치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응보형 보복을 통해서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만, 국내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민간인 학살은 그 내용상 집단 학살죄

또는 반인도 범죄 등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국제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적인 절차에 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학살이 당시 조직적이고 총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해의 최종 책임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가해자 또는 가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피학살자들 대부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고 약식 처형되거나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처벌되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이 분야의 국제적인 권위자이며 유엔의 의결에 따라 과거 청산에 관한 특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테오 반 보벤은 가해자 처벌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인권 침해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과 희생자와 가족 또는 친척에 대한 정당하고 적절한 배상의 실패 사이에는 명백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사실 자체도 인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구제 조치는 국내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다는 한계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한다는 원칙뿐만 아니라 피학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을 사후에라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 모두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처리 방식이 원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진실을 밝힐 의무를 가해자에게 부여함과 동시에 스스로 과거의 진실을 밝힌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는 해법을 취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한다.

### 3. 남는 문제들—정치 사회적 측면

독일 나치 정권의 유태인에 대한 홀로코스트(대학살), 르완다와 구유고 공화국의 민간인 학살 문제는 주로 인종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었지만, 우리 나라는 과거 이승만 정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좌우익이라는 이념적인 문제와 남한과 북한의 문제를 이용했다는 측면이 있다. 또 한국전쟁 개전 초기에는 미군의 인종주의적인 학살의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과거사를 다루는 데는 정치 사회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근본적으로 민간인 학살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측면도 갖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 학살을 해결하는 데는 과거의 완전한 부정을 통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데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은 국민적인 대통합을 통해서 새로운 인권 사회 건설로 나아가는 데 집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민간인 학살 사건을 둘러싼 현실주의적인 과제들은 이행기적 정의로 볼 수 있다. 민주화 이행기로의 맥락에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정치적인 타협의 문제이자 민주 인권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회적인 개혁 과제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남는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민간인 학살 문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극복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기존의 자유 민주주의 세력 또는 국가가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해졌던 일로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인 학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이다. 결국 좌우익의 편향된 시각을 극복하면서 해결될 문제로서 인간의 존엄에



민간인 학살 문제를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선행 경험을 거울삼아 진상 규명과 과거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살의 주체가 누구든 간에 피학살 사건의 전반을 다루어야 한다. 여순사건이나 이른바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처럼 이념적 내용을 갖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둘째 학살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이다. 인민군 및 좌익 동조 조직의 구성원이 자행한 학살의 가해자 및 책임자는 사실상 처벌할 수 없을 뿐더러 일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군경 및 미군 등 이른바 아군 측 가해자와 책임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유엔은 과거 청산의 핵심이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라고 보고 있으며, 배상과 보상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문제는 그 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취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적인 차원의 해결 방식은 책임자 처벌을 통한 사법 정의를 수행하는 방식보다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명예 회복 조치를 통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반론을 따르고 있다.

셋째 유엔군으로 들어온 미국과 영국 등 외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온 외국군이 우리 국민을 학살한 것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문제가 형성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 문제는 학살 주체인 미국 등이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재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자의 경우는 노근리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등이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많은 정치적인 이해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 풀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는 정부는 사건 진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적어도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의 의지를 가져야 한다.

넷째 해결 방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해야 한다. 거창 신원면 학살 사건과 제주 4·3 사건 등은 이미 법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 거창 신원면 사건은 명예 회복만을 다루었고, 제주 4·3 사건은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다루었다. 거창 신원면 사건은 당시 국회와 군사 재판에서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 하지만 당시 재판을 보면 죽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제주 4·3 항쟁의 민간인 희생도 완전히 밝혀졌다기보다는 그 사건을 인용하는 것이 그나마 알맹이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민간인 희생 전반을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선행 경험을 거울삼아 진상 규명과 과거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야 한다.

민간인 학살 문제는 은폐되거나 왜곡된 과거사를 바르게 정리한다는 역사적인 차원, 공권력의 남용과 재발을 방지하고 인간의 생명권과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차원, 50여 년 동안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고통에 대한 국가적 책무와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학살 문제는 발생된 시점으로 역사를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래 지향적인 인권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하지만 16대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민간인 학살 관련법을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사회 일부의 시각은 극복돼야 한다. 이 문제는 더 이상 논의의 쟁점이 될 수 없다. 즉 인권 피해자의 문제는 당사자와 가족 및 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자 국가의 존립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권 피해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미 지난 과거 완료형의 낡은 것이 아니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과거의 든든한 기반 없이 미래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처럼 허황된 일이다. 민간인 학살 문제가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비극이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커다란 수치이다.

## 역사 교과서와 역사 교육

장석규(안양 동안고 교사, 전국역사교사모임)

### 1. 민간인 학살과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정

많은 사람들이 교과서 서술 내용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하지만 교과서 서술의 틀인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은 별로 없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을 규정하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2002학년도부터 시행된 7차 교육과정은 국사 교과에도 큰 변화를 주었다. 국민 공통 기본과목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국사와 심화선택 과정인 한국 근현대사로 나누어진 것이다. 근현대사는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학교 혹은 학생의 선택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국사는 기본적으로 선사 시대부터 대원군 집권 전까지를 다루고 있고, 한국 근현대사는 그 이후인 대원군 집권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교육과정은 그 동안 국가나 보수 지배층이 금기시하던 근현대사를 특히 현대사를 정식 교과목의 하나로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

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변화된 일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 근현대사의 경우 필수가 아니고 여러 사회과 과목 중에서 선택하는 관계로 학교나 학생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형적인 역사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 국사 교육과정 세미나에서 7차 교육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분의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 모든 학교가 근현대사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교육과정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현실은 어떠한가? 사실 고등학교 교육이 모두 대학 입시에 휩쓸려 있는 마당에 입시에서 점수를 잘 얻을 수 있는 유리한 과목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가 그대로 학교 현장에 나타나고 있다.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유신체제 아래서 실시된 것이다. 그것은 교과서에 정치 권력의 정치적 요구를 확실하게 반영하겠다는 의도인 동시에 역사 해석을 국가 권력이 독점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때 국정 교과서 체제는 권력이 만든 역사로 사실상 '과거 사실과 권력의 대화'의 결과물이다.

교과서 편찬과 관련해서 새로이 주목되는 점은 국사는 국정 교과서의 틀을 유지하고 있으나 근현대사의 경우 검인정제로 전환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된 이래 처음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따라서 종래 획일적인 역사관을 강요받던 국정제에 비해 검인정 제도가 가지는 의미는 서술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계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당시 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한 교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처음 준거안을 본 나는 적잖이 실망했다. 준거안의 내용은 기존 국사 교과서와 다를 바가 없었다. 각 대단원, 중단원과

그 안의 내용까지 규정되어 있었는데, 준거안의 문장만 좀 다듬고 몇 마디 덧붙이면 그대로 국사 교과서가 될 판이었다."

국사 교과서란 국가가 교육 내용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획일적인 역사 인식과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해 온 국정 교과서 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검인정제는 다양한 역사관의 반영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라는 시대 정신을 실현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행 검인정제는 오랜 기간 정권의 시녀로 복무했던 역사 교육의 찌꺼기라는 본질을 유지한 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것이라는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과정은 "영역별 내용—(1) 한국 근현대사의 이해"에서 현대사 학습의 목표를 "① 8·15 광복 직후의 분단 과정을 국제 정세 속에서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식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란 무엇일까? '정통성'의 사전적 의미는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권력 지배를 승인하고 허용하게 하는 논리적, 심리적인 근거"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가 특히 민간인 학살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인 학살의 가해자들은 전쟁 영웅으로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한 건국 공로자로 그 후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기업체 사장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되었다. 더구나 지리산 자락 등 산간 지역 민간인의 무차별 학살에 구사된 초토화 작전은 간도를 포함한 만주 전역에서 전개된 항일 유격투쟁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일제가 구사한 비민분리(개릴라를 물고기, 인민은 물이라는 개념에서 물에 해당하는 주민들을 소개시켜, 즉 물을 빼버려 물고기를 잡는 토벌 전술)에 기초한 군사 작전의 연장이었다. 이

것은 조선인으로 구성된 일제의 유격대 토벌부대인 간도 특설대 출신들이 해방 후 한국군의 수뇌부에 대거 포진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즉 주민들을 잠재적인 유격대의 동조자로 보는 일제의 토벌 전술이 한국군에 전수되고 익숙해진 상황에서 실전에 적용된 예라고 하겠다. 결국 민간인 학살 문제는 해방 후 친일 민족 반역자가 주도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의 결과물인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덤 위에 서 있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민간인 학살 문제를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통성’ 운운하는 국가주의적 교육목표부터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나 출판사는 검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대명제 때문에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에 강하게 속박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의 다양한 연구 성과가 제대로 교과서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이 교과서 제작에 봉사와 지원을 담당하고 쟁점이 될 수 있는 영역의 경우 최소한의 조정에 머무는 것을 전제로 교과서 자유 발행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민간인 학살과 교과서 서술

국사는 기본적으로 선사시대에서 대원군 집권 전까지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 문제와 관련이 없다. 다만 얼마 전 여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일본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사건을 계기로 근현대사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근현대사를 필수로 채택하라는 압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전면적인 수정은 교육과정 자체의 과행을 불러올 것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압력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1학년



제주 4·3 항쟁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학술대회(2002년)

과정의 국사 교과서에 근현대사 부분을 50쪽 정도 추가했지만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내용은 소개할 가치조차 없을 정도이므로 여기에서는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 내용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근현대사 교과서 1차 검정 심사에 초본을 제출한 출판사는 9개이다. 이 중에서 4개 출판사가 검인정에 통과했는데, 〈금성〉, 〈두산동아〉, 〈중앙교육연구소〉, 〈대한교과서〉가 그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교과서들은 학교 단위별로 선택하게 되는데 대개 역사 교사들의 논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글에서 준거안이 검인정 교과서가 가져야 할 다양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의 반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출판사별 서술 내용의 차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교과서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선정된 〈금성〉본의 교과서 서술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 있는 현대사 서술 분량은 총 4개 대단원

중 마지막 한 단원에 불과하고, 분량도 총 368쪽 중 110쪽 정도로 3분의 1이 못 된다.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대사가 오히려 적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기에서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은 축소 서술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먼저 민간인 학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주 4·3 항쟁의 경우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4·3 사건으로 명명하면서 항쟁이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해서 일어났음을 서술하고 있다. 제주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미 군정과 새로 들어선 정부는 군인과 경찰, 우익 청년 단체들을 동원하여 유격대를 진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함께 희생되었다.'(263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왼쪽에 제주 4·3 연구소와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인터넷 주소를 소개하고, 아래에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을 간단히 소개하는 등 제한된 공간에서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고 애쓴 집필진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폭동'이나 '반란'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지 않는 등 종래 교과서의 극우 반공주의적 시각에서 상당 부분 변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민간인 학살의 숫자도 공식 발표된 3만 명에 근접한 수치인 '수만 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쉬운 점은 불과 10줄에 해당하는 서술이라는 점이다. 현대사의 비중이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 정도라면 흔적만 남겼다는 오해를 피할 수 없다. 사실 제주도민의 학살은 유격대 진압 과정에서 덤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당시 미 군정이나 정권의 우두머리들이 제주도민을 잠정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심지어 전 제주도민을 죽이더라도 공산당만 뿌리 뽑을 수 있다면 상관없다는 태도였기 때문에 이미 학살은 예고된 것이었다. 전체 무장대의 수가 미 군정 자료에 의하면 약 500명

정도였음을 감안할 때 나머지 2만 9,500명의 죽음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더구나 초토화 작전을 앞두고 선포된 계엄령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었고, 피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노약자, 부녀자이고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집단 죽임을 당했다면 이는 '희생'이 아닌 '학살'의 차원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에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으니 전면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제주 4·3 항쟁과 함께 해방 정국에서 발생한 최대의 민족사적 비극으로 불리고 있는 여수·순천 사건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다음과 같다.

한편, 같은 해 10월에는 제주도 유격대 진압에 동원된 여수 주둔 군대가 이에 반발하여 폭동을 일으켜 여수와 순천 일대를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여수·순천 10·19 사건). 폭동은 곧 진압되었으나, 이에 참여한 군인들 중 일부는 무장을 한 채 산 속으로 숨어들어가 저항을 계속했다. 이들의 저항은 6·25 전쟁 때까지 이어졌다.(263쪽)

사건의 명칭에서 이념적 편향성에 근거한 '반란'이 아닌 '사건'으로 쓰고는 있지만 서술 분량 면에서 지나치게 축소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미 군정 정책의 총체적 실패와 친일 민족 반역자 청산, 토지 개혁 등 해방 후 남한 체제의 반민중 성에 대한 저항을 배경으로 '군사 반란적인' 성격뿐만 아니라 '민중 항쟁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에 대한 서술이 없고 단지 제주 진압 반발만 지적하고 있다. 또한 진압 과정에서 만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학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 호랑이'로 이름난 제5연대 김종원 대대장이 일본으로 즉결 참수된 사건으로

유명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서술도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승만 정권이 좌익에 대한 공포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이를 통해 극우 반공 정권을 강화하는 데 정치적으로 악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엄청난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사실도 전혀 기술되고 있지 않다.

한국전쟁에 관한 서술은 중단원 ‘광복과 대한민국의 수립’의 4개 주제 중 마지막 주제로 편성하고 있고, 명칭은 ‘6·25 전쟁’으로 총 7쪽의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 동안 가장 강조되었던 전쟁의 발발과 관련해서 ‘종래 북괴군이 새벽 4시를 기해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남침했다.’는 반공주의적 관점은 어느 정도 극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이 군인보다도 민간인의 피해가 큰 전쟁이라는 점에서 교과서 서술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다.

여순 사건 학살지 - 종산 초등학교



전쟁 과정에서 민간인에 대한 학살도 곳곳에서 일어났다. 남한에서는 전쟁이 일어난 직후 보도연맹 관련자들이 처형되었고, 경남 거창과 충북 영동을 비롯한 곳곳에서 주민들이 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다. 후퇴하는 북한군도 대전 등지에서 많은 주민을 죽였다. 남과 북 사이에는 셧을 수 없는 적대감이 쌓여 갔다.(272쪽)

이전 교과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민간인 학살을 소개한 것은 다행이라 하더라도 이 전쟁의 특징이 ‘톱질 전쟁’, 혹은 ‘피스톤 전쟁’으로 표현되듯 이남 지역에서만 하더라도 10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수반한 끔찍한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 정도라면 학살 주체 면에서 남측이나 북측에 의해 저질러진 학살 과정과 원인 진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양비론 식이나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상황 논리로 생각될 위험이 있다.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종래 극우 반공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숨기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국민의 역사 의식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인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교과서 집필진에 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교육과정이 국가주의나 이념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사건은 ‘맺은 자가 푼다’는 원리대로 국가가 통합 특별법의 통과에 적극적일 때 역사 교과서 서술 문제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민간인 학살과 역사 교육

대한민국의 교육목표는 '훌륭한 민주시민의 양성'이고, 민주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는 '인권'이다. 여기에 종속된 역사 교육의 최종 목표도 당연히 민주시민의 양성이며 방법 면에서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확고한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는 인간으로 키우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권 교육에 가장 교훈이 되는 것은 한국전쟁을 전후한 민간인 학살에 있지 않을까? 우리가 처한 현실은 땅 위에 그어진 휴전선을 기준으로 하늘로 바다로 수백만 명의 무장 군인과 최첨단 무기들이 밀집된,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춘 세계 제일의 화약고이다. 이 상황에서 사소한 우발적인 상황에도 남북한 당사자나 미국의 대응에 따라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처지이다. 과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또다시 학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돌이켜 보면 4·3 당시 제주도민의 무고한 죽음이 철저히 조사되고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면 비록 전쟁이 일어난 특별한 시기라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한 불가피한 희생은 최소화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층 성숙된 인권 국가로 발전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4·19 당시 민간인 학살 문제가 예정대로 규명될 수 있었다면 광주 학살 또한 막을 수 있었다고 본다.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은 비극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이론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매우 훌륭한 역사적 사례일 것이다. 이렇게 살아 있는 생생한 역사 교육의 대상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된다면 올바른 민주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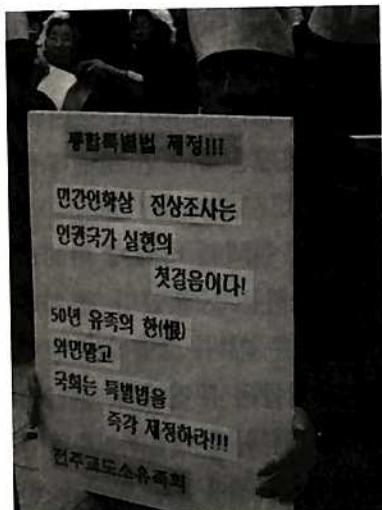
면에서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와 들추어서 혼란만 야기한다는 일부의 우려는 단지 이 사건이 과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일인 동시에 미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2003년을 뜨겁게 달구었던 '교육 정보화 시스템(NEIS)' 문제의 본질이 학생의 정보 인권에 있었는데도 이익단체 간의 갈등인 양 치부되는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와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인권 의식이 부족한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역시 민간인 학살 문제가 규명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깊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지 국군을 환영하지 않았다고 온 마을이 몰살당하고, 머리가 짧다고 일본도로 목이 잘리고, 밀가루 한 부대 주면서 가입하고 한 단체에 가입했다가 전쟁이 일어나자 집단 총살당하고, 그 가족은 빨갱이로 낙인 찍혀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야 하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이 생겨날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정권을 비판했다고, 노동운동 했다고, 국가 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는 것을 그저 '별것 아니'라는 분위기로 치부되어 온 것이다. 또 같은 민족에게 단지 '빨갱이'라는 이유로 온갖 잔인하고도 야만적인 학살을 한 과거 사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현실이고 보면 제3세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역사 교육의 목적은 과거 사실을 통해 현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근거로 더 바람직한 미래를 모색하는 것에 있다. 현재란 과거의 연속이며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은 무엇이며,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는 과거 사실과 어떤 연장선 위에 있을까? 수백만 명의 죽음이 있었는데도 죽인 실체가 없고 참혹했던 학살의 현

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은 증거가 될 수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무시하는 국가 권력 아래에서 신뢰와 정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라고 하여 '빨갱이'로 몰고 정당한 절차 없이 폭력을 가진 자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사회에서 대화와 타협이 설 자리는 없다.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발상이 통하는 사회에서 '색깔론'은 정치적 발전을 적극 방해할 것이며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들은 복수심에 기초하여 당시 가해자들을 처벌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왜곡된 것을 바로잡자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진실 규명이야말로 억울하게 죽어간 학살 피해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첫걸음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점에서도 특별히 국민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이 이 문제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면 자



통합 특별법 제정!!!  
민간인학살 진상조사는  
영광국가 실현의  
첫걸음이다!  
50년 유족의 한(恨)  
외면명고  
국회는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전주교도스유족회

연스럽게 학살자와 공범이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교과서가 갖는 심각한 문제, 교육 현장의 권위주의적 분위기, 수업 자료의 부족 등 민간인 학살을 수업의 장에 끌어들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의 만남의 장인 수업은 '성역' 정도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따라서 역사교사 스스로 발상의 전환과 노력이 가미된다면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에 배정된 수업 시간은 6~8단위(주당 3~4시간)로 확보된 만큼 민간인 학살 문제를 가르치기에 충분하다.

오늘날 세대들이 영상세대인 점을 감안하면 그들의 흥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련된 영상물을 확보하고 편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업에 활용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한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기 어렵다면 모임을 만들고 공동작업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민간인 학살 사건은 그동안의 극우 반공체제에서 침묵을 강요당한 까닭으로 남의 이야기로만 여겨질 가능성이 크다. 아무리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건이라도 자신의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없거나 적다면 적극적인 흥미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개인에게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가족사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발표하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학살된 민간인의 수를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가족이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비로소 감추어지고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이 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알게 될 것이다. 민간인 학살 지역을 답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으로 영·호남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으며, 대체로 단위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살 지역의 답사는 거리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답사를 통

해 학생들은 이 문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발생한 자신과 관련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답사 중 당시의 피해 당사자나 유족을 만나 생생한 당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시민 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교육 자료 제작에 임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흥미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애니메이션, 플래시, 만화 등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민간인 학살 사건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물이나 사진 자료 등이 대단히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루한 증언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청소년만을 탓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제6장

### 후손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화의 나라



## 후손에게 물려줄 인권과 평화의 나라

— 강창일(배재대 교수, 범국민위원회 위원장)

### 1. 남북을 잇고도 남는 주검

50만 혹은 100만 명이라고도 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태를 듣노라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율이 납니다. 50만은 작은 숫자가 아니다. 희생자의 평균 키를 1.5m로 잡아도 이들을 잇대어 놓으면 750km에 이른다. 한반도의 북부 압록강 하구에서 전남 해남까지의 직선거리가 650km라 하니, 민간인 희생자의 주검을 한 줄로 이으면 한반도의 남과 북을 잇고도 남는다. 100만이면 두 배,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200만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이다.

이쯤 되면 이 땅에 겹겹이 쌓인 희생자들의 주검과 유족들의 피눈물을 거름으로 이승만 정부가 세워지고 유지됐다는 일각의 주장이 그저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물론 미군이나 인민군에 의해 저질러진 민간인 학살도 있었다. 하지만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군인이나 경찰에 의해 자행된 학살이 결코 그에 못지않다.

희생자들의 공포와 비명, 내를 이루어 흘렸을 그들의 피…….

그 유가족들의 한과 눈물, 온갖 멸시와 좌절, 한반도는 분명 통곡의 땅이었다.

### 2. 부끄러운 과거사 정리를 위해

이제 50년이 훌쩍 흘러갔다. 세상도 많이 바뀌었다. 냉전 체제는 해체되고 세계는 재편되고 있다. 민주적인 제도가 발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또한 넓어지고 깊어졌다. 반세기 전, 총칼 쥔 이들이 광기 어린 학살을 자행하면서 내세웠던 이념의 대립도 시들해졌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신장되면서 이제 우리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뿐만이 아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과거사에 대한 정리가 한창이다. 끈질기고 철저하기로 유명한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국가 차원의 해결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 대만 이등휘 총통, 1947년 발생한 2·28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해 사죄(1995년 2월 28일)

▷ 미국 클린턴 대통령, 과거 혹인을 상대로 한 매독 실험 인정 및 사죄(1997년 5월 16일)

▷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 150년 전 아일랜드 대기근 방치로 인해 100만 명의 아사자 발생에 대해 사죄(1997년 9월 26일)

▷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400년 전 벌어진 신교도 학살 개입 사죄(1997년 8월 23일)

▷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 100년 전 드레퓌스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임을 사죄(1998년 1월 13일)

▷인도네시아 와하드 대통령, 1991년 동티모르 학살에 대해  
사죄(2000년 2월 29일)

무려 400여 년 전의 과오를 반성, 사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그 사례는 무수히 많다. 물론 외교적인 수사도 있겠지만,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가 그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사과 주체의 위상을 한껏 고양시켰음은 물론이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예가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법적으로 제자리를 찾았고,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이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 회복의 길로 들어섰다. 또 도민 8명 중 1명꼴로 희생되었다는 '제주 4·3 사건'의 문제도 특별법 제정에 이은 진상 조사 보고서 채택,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까지 이르렀다. 1948년 4월 3일 발발한 4·3 무장봉기의 진압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해 정부의 수반으로서 희생자 앞에 고개 숙이고 유족들을 위로한 2003년 10월 31일 대통령의 공식 사과는, 제주도민만이 아니라 인권과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세계인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55년 만의 일이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인권 국가로 발돋움하여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는 전기를 마련했다.

### 3. 진실의 바닥을 다지고 화해의 꽃을

이제 반세기 전 이리저리 휩쓸리다 왜곡된 이념의 물살, 혹은 집단 광기의 광풍에 휘말려 깊은 한을 안고 이 산하에 묻힌 모든 이들을 위로해야 한다. 모두 끄집어내어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진실이 규명돼야 화해의 꽃을 피울 수 있다.

사과할 일은 고개 숙이고, 책임이 있으면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받지 못한 불쌍하고 여린 영혼들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떠나니고 있다. 벌써 썩고 문드러진 희생자의 주검은 차갑고 음습한 곳에서 그렇게 말없이 누워 있다. 유가족에 의해 수습된 시신은 그나마 낫다. 어디서 어떻게 죽어 어디에 묻혔는지조차 모르는 유족들의 한은 말해 무엇하랴! 또 바다에 버려진 수중고흔들은 넋이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영영 찾을 길이 없다.

정말 그렇게 내버려 둬도 될까? 그들의 주검과 한과 눈물을, 부도덕한 권력욕을 채우기 위한 억울한 희생으로 내버려 둬도 될까? 그들의 한 맷한 죽음을 냉전시대 희생양으로만 위무하고 분단의 질곡을 헤쳐 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죽음으로 그냥, 그대로 둘 것인가? 그리 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다. 자손만대가 평화롭게 서로 더불어 함께 잘 살아가길 바라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은 우리 역사의 뚜렷한 징표가 되어야 한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살아 있는 교훈이 되어야 한다.

가르침이 되려면 거짓이 없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절대 필요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잊혀지기를 강요당했던 50년 넘는 세월 동안 원혼들이 구천을 헤매는 이유도 그들 죽음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들이 눈물을 거두지 못하는 것 또한 희생자의 주검과 유족들의 한 맷힌 가슴에 더해지는 온갖 왜곡과 빨갱이 덫칠 때문이다.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 진실을 파헤치지 않고 두루뭉실하게 냉전, 분단의 희생양이라 규정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희생을 막을 수 없다. 화해와 용서의 전제 조건 또한 진실 규명이다. 진실이 바닥을 다져야 용서의 나무를 심고 화해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또 국가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죄를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무고한 인권 침탈과 희생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을 해야 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공권력의 힘으로 결코 야만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살 책임에 따른 국가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이 나라를 인권과 평화의 본보기로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후손에게 자신 있게 건네 줄 값진 선물이다.

#### 4.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선물

우리는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비이성적이고 부도

덕한 권력이 휘두르는 총칼에 무고한 민간인이 처절히 유린당하고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세상을 물려줄 것인가? 세계인이 혀를 내두르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야만적인 나라를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는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진다. 해방 이후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갈등을 조장하고 민족 공동체를 파괴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잘못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했을 때 왜곡된 역사와 그 과거사를 정당화하고 은폐시키려는 추잡하고 가공할 음모는 끊임없이 꾸며진다. 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목숨까지 앗아간다. 폭력은 대물림되고 희생도 대물림되고 만다. 지금까지 어둡고 차가운 땅속에서 꽁꽁 묶여 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진실이 밝은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절박한 이유이기도 하다. 하루빨리 드러내어 갈무리 짓고, 인권과 평화가 그 어떤 이념이나 가치보다 소중하다는 영롱한 정신을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 부 록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 일지
2.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내역
3. 민간인 학살 관련 사회단체와  
유족회 일람

## 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운동 일지

### ● 한국전쟁 당시

1951년 3월 29일

-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공비 토벌을 이유로 1950년 2월, 719명의 주민을 학살한 거창사건을 거창 출신 신중목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로

3월 30일

- 거창사건에 대해 국회와 내무·법무·국방부의 합동 진상조사단 구성

4월 7일

- 거창사건에 대해 국회와 정부(국방부)의 합동조사반에 의한 진상조사 실시
- 길 안내를 맡은 경남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이 신성모 국방장관과 사건 모의하여 9연대 정보 참모 최영두 소령의 수색 소대로 하여금 군인을 공비로 위장 매복시켜, 거창읍에서 신원면으로 통하는 협준한 계곡의 길목인 수영더미재에서 합동 진상조사단에게 일제 사격을 가해 조사를 못하고 되돌아가게 함

7월 27일

- 거창사건 발생 5개월 만에 대구 고등군법회의는 '재판장에 강영훈 준장, 심판관에 정진환 준장, 이용문 대령, 법무관에 이운기 중령, 검찰관에 김태청 중령, 김부남 소령, 김동수 대위'로 심판부 구성

12월 15일

- 거창사건에 대한 구형 공판

12월 16일

- 거창사건에 대한 관정판시에서 9연대장 오의경 대령(구형 사형) 무기징역, 3대대장 한동석 소령(구형 사형) 징역 10년, 소대장 이종대 소위(구형 징역 10년) 무죄,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구형 징역 7년) 징역 3년으로 관련 군지휘관에게 실형 확정
- 실형을 받은 이들이 1년 만에 석방되어 재기용됨

### ● 1960년대 : 4·19 직후

1960년 5월 11일

- 거창사건 당시 무고한 주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게 한 신원면장 박영보를 분노한 유족들이 생매장하고 실형을 삶

5월 20일 이후

- 경남 동래, 마산, 창원, 김해, 금창, 밀양, 함양, 경북 문경, 경산과 경주, 대구 등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 결성

6월 16일

-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경북지구 피학살자 유족 연합회' (회장 : 이원식) 결성

8월 28일

-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남지구 피학살자 유족 연합회' (회장 : 문대현) 결성

10월 20일

- 서울 종로의 전 자유당 중앙당부 회의실에서 경상남북도 각 시군 유족회 대표 50여 명이 모여 '전국 유족회' 창립 (회장 : 노현섭)

- 유족회에서 유골을 발굴하여 합동묘역을 조성하고 지역별 합동위령제 봉행

-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에 청원 및 호소문, 진정서 제출

- 유족들이 집회를 개최하여 '학살 책임자는 공적인 정치 무대에서 물러갈 것, 유족에 대한 정치경찰 감시 해제, 유족 중 고아와 노쇠자에 대한 정부 구원' 등을 요구하는 선언문 채택

5월 23일

- 제4대 제35회 국회 제19차 본회의에 박상길 의원(자유당) 외 11인이 발의한 〈거창, 함양, 산청 등지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 결의안〉과 김의택 의원(민주당) 외 11인의 (전남 합평 등지의)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에 관한 긴급 결의안〉, 서정귀 의원 외 11인의 〈통영, 남원, 문경지구 양민학살사건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각각 상정

- 세 안을 단일안으로 만들자는 국회의장(곽상훈)의 제안에 따라 단일안 채택

- 이와 함께 경남반, 경북반, 전남반 각각 3인의 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할 것과 다른 피해 지구도 반드시 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자유당, 민주당, 무소속 세 대표들이 위원을 인선해 차기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결

-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최천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5월 31일~6월 10일(11일간)

-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현장을 조사하고 행정부에 대한 견의안을 포함한《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제출
- 보고서에 따르면, 경남 거창, 거제, 함양, 동래, 산청, 울산, 충무, 구포, 마산, 산청군 등지에서 3,085명, 경북 대구시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등지에서 2,200명, 전남 함평군에서 524명, 전북 순창군에서 1,028명, 제주도에서 1,878명 등 총 8,715명의 양민이 학살됐으며, 10,041호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고, 이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피해 신고가 증가 일로에 있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케 하고, 이를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 행정부에 이관하여 장시일에 걸쳐 정확하고 상세한 실정을 조사토록 결의
- 특위는 행정부에 대한 견의안에서 첫째, 조사한 지역뿐 아니라 사건 조사를 위한 군·경·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악질적 관련자 및 피해자와 피해 상황을 조속히 조사할 것, 둘째, 관련자의 엄중한 처단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법률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시효의 저촉 여부에 관계없이 '양민학살사건 처리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
- 1960년 6월 21일 열린 제35회 국회 제42차 본회의에서 특위 보고 결과 최종 의결

### ● 1960년대 : 5·16 군사 쿠데타 이후

1961년 5월 18일 이후

- 5·16 군사정권은 소급기간이 3년 6개월에 달하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들을 혁명 재판소에 회부
- 검찰은 이들이 반국가 단체인 북측을 이름처럼 했거나 좌익 용공 의식을 고취했다는 등의 이유로 8개 유족회 간부 27명에 대해서 사형, 무기 등 중형 구형
- '혁명 재판소'는 이들에게 동법 제6조에 규정된 '특수 반국가 행위'를 적용하여 사형 1명, 징역 15년에서 5년 12명 등을 선고
- 5·16 군사정권은 유골 발굴 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 명부, 유족회원 가입 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상자 등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을 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에 의해 남김없이 압수 폐기

- 또한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과 비석을 파헤쳐 일부나마 발굴된 유골이 다시 불살라지는 부관참시 자행

### ● 1980년대

1988년부터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운동, 거창(신원면)사건 진상규명 운동 재개

### ● 1990년대

경기도 고양 금정굴 학살, 전남 함평 학살, 경북 문경 학살, 전북 순창 학살, 여순사건 학살,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 등의 진상규명 운동이 시작되면서 개별 입법 운동 시작. 전국 각지에서 위령제 및 일부 유골 발굴 차수

도의회 보고서 채택

- 전북도의회 <6·25 양민학살 진상실태 보고서>(1994)
- 경북도의회 <양민학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경과 보고서>(2000)
- 경기도의회 <고양 일산 금정굴사건 진상조사위 활동경과 보고서>(2000)

군의회 보고서 채택

- 거창군의회, 경산시의회, 괴산군의회, 나주시의회, 담양군의회, 산청군의회, 익산시의회, 함평군의회, 화순군의회

법 제정 및 정부 조사

- 거창법 제정(1999)
- 제주 4·3 법 제정(2000)
- AP 통신 노근리 보도 후 노근리 한미 합동조사반 조사

### ● 2000년

- |         |  |
|---------|--|
| 6월 21일  | '전쟁과 인권' 학술 심포지엄                                       |
| 7월 27일  | 국방부 민간인학살 진상조사 축소, 은폐 시도 규탄                            |
| 9월 7일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원회 결성 |
| 11월 25일 | '국회 공청회—민간인학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개최                         |

#### ● 2001년

- 5월 23일 민간인학살 특별법 국회공청회 개최  
9월 6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발의(김원웅 의원 외 46인)  
10월 22일 특별법 제정 공대위 출범  
11월 5일~12월 21일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유족회 농성(영등포 산업선교회, 국회 앞)

#### ● 2002년

- 4월 16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고문 면담,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받음  
7월 4일 2002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  
8월 29일~9월 30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 협의회,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역 목요캠페인 진행  
11월 7일 민간인 학살'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여의도 대회

#### ● 2003년

- 1월 30일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전국 유족들의 국가 인권위 1차 집단 진정  
2월 27일 통합 특별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 돌입 (국가 인권위원회 11종)  
4월 3일 대국회 투쟁 선포(여의도 한나라당사 앞, 노숙 농성  
5월 6일 농성 대표단, 강금실 법무장관 면담, 법무부 협조 약  
5월 23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완전 쟁취' 전국유족 사회단체 총력투쟁 대회  
5월 29일 농성 대표단, 김두관 행자부 장관 면담, 행자부 협조 약속받음  
6월 17일 2003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6월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 합의 파기로 6월 입법 무산  
6월 20일 이병석 의원 규탄, 114일간의 농성 정리  
7월 18일 국가 인권위,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  
11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사 특위 구성 결의안 통과  
11월 17일 국회 과거사 특위 1차 회의, 통합 특별법 국회 행정자치

#### 위원회에서 과거사 특위로 이첩

- 11월 26일 과거사 특위 민간인학살 관련 법안 공청회  
12월 10일 통합 특별법, 국회 과거사 특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12월 16일 국회 과거사 특위에서 통합 특별법 가결, 법제사법 위원회 회부  
12월 19일 전국 유족, 단체 통합 특별법 완전쟁취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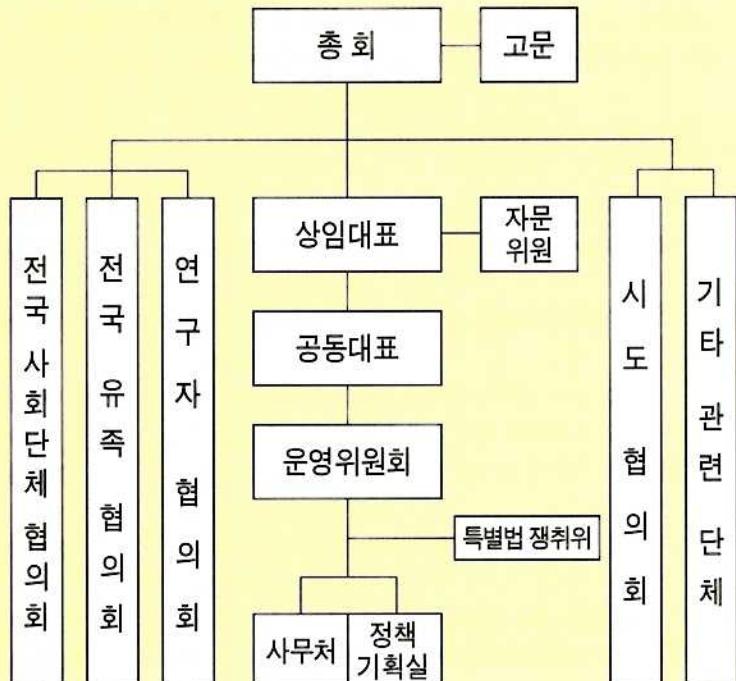
#### ● 2004년

- 1월 8일 통합 특별법,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  
2월 2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월 9일 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열 번째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으나 한나라당 반대로 안건 취소

## 2.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내역

### 1) 조직

#### 조직 구성도



#### 범국민 위원회 임원

|          |   |
|----------|---|
| 상임공동대표   | 이해동, 이이화, 김영훈   |
| 공동대표     | 강정구, 곽동철, 권종대, 김상찬, 김상태, 김영만, 김중배, 단병호, 문규현, 서영선, 안병욱, 유상덕, 윤순녀, 이광달, 이규희, 이명남, 이부영, 이장희, 이혜숙, 임현영, 정맹근, 정해숙, 조정배, 진관, 청화, 현기영, 홍근수 |
| 고문       | 강만길, 고은, 김동훈, 류춘도, 박순경, 박정기, 박형규, 심우성, 이돈명, 이소선, 이수갑, 채의진   |
| 운영위원     | 강경선, 강정구, 강창일, 김경남, 김동춘, 김영범, 박민순, 박갑주, 서광수, 서봉석, 이창수, 이춘열, 이영일, 임광빈, 장석규, 장완익, 정진우, 정희상, 한대수, 한홍구, 황필규, 채의진                        |
| 운영위원장    | 강창일   |
| 사무처장     | 임광빈   |
| 정책기획실장   | 이춘열   |
| 특별법쟁취위원장 | 이창수   |

\* 2003년 12월 현재

## 유족 협의회

강화 희생자 유족회, 거제 유족회, 거창 유족회,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회, 고창 유족회, 고흥 유족회, 괴산군 사리면 보련 유족회, 나주 동창교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 나주 봉황 유족회, 남양주 진접면 피학살 유족회, 단양 괴개굴 희생자 대책위원회, 대구 유족회, 대전 형무소 산내학살 진상규명 유족회, 문경 양민학살 피학살자 유족회, 백조일손 유족회, 부경 유족회, 산청 시천·삼장 양민학살사건 피학살자 유족회, 완도 유족회, 여수 남면 양민학살 유족회, 여순사건 유족회, 익산역 미군폭격 유족회, 전주 교도소 유족회, 정읍 보도연맹 유족회, (사)합평사건 희생자 유족회, 함양 도북 유족회, 해남 보도연맹 유족회(이상 가나다순 26개)

## 사회단체 협의회

거제 박물관, 거창 민예총, 거창 평화인권 예술제 위원회, 고양 금정굴 양민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고양 시민회, 국제 민주연대, 나주 문화원, 나주사랑 시민회,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민간인 학살 문제해결을 위한 경남지역 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새사회 연대, 여수지역 사회연구소, 역사문제 연구소, 열린사회 희망연대, 인권운동 사랑방, 자유평등연대를 위한 인권운동 센터(광주 인권운동 센터), 전국 역사교사 모임,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전북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제주 4.3 연구소, 지리산 외공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 위원회, 진주사랑 청년회, 참여자치 거창 시민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괴주 시민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이상 가나다순 28개)

## 2) 활동 내역

### 활동 목표

한국전쟁을 전후한 기간에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자행된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피학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전국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공동 활동을 하고자 한다. 또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전국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서 해원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과 그 유족들의 통한의 50년 세월을 위로하며,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국가 폭력의 망령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힘쓴다.

### 사업 내용

#### ① 전국 통합 특별법 제정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케 하도록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

#### ② 피해 실태 조사·연구

국내외 각종 자료를 발굴하고 관련 증언을 채록하는 등 전국적인 학살 실태를 조사하고, 민간인 학살의 실체를 밝히는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 ③ 조직 사업

유족회, 연구자 모임 결성을 촉진하고, 지역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 ④ 선전·홍보

민간인 학살 문제의 중요성과 현재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높여 우리 사회의 의제로 만들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다큐멘터리 제작, 출판 등 문화 사업을 통한 선전·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 ⑤ 학살 데이터베이스, 학살 지도를 통한 정보 공유

연구자, 학생, 시민들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실태를 잘 알 수 있도록

록 학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며, 학살 지도를 통해 지역별 학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특별한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국가 범죄였음을 널리 알린다.

#### ⑥ 회원 사업

후원 회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마련하고 회원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조직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 ⑦ 연대 사업

전쟁과 국가 폭력에 반대하는 연대 활동을 전개한다.

### 주요 활동

#### ● 2000년

- 2월 문경, 남원 산청, 함양 현장 조사
- 5월 경산 위령제 참가 및 현장 조사
- 6월 21일 '제1회 전쟁과 인권 심포지엄' 개최  
(프레스 센터 국제회의장)
- 7월 27일 '국방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은폐·조작 시도 규탄'  
기자회견
- 9월 7일 유족 협의회 결성식 및 범국민 위원회 창립 총회
- 9월 고양 금정굴 위령제 참가 및 현장 조사
- 10월 여순 사건 위령제 참가 및 현장 조사
- 11월 25일 '국회 공청회—민간인 학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개최

#### ● 2001년

- 1월 강화 지역 학살 현장 조사
- 5월 23일 민간인 학살 특별법 국회 공청회(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
- 6월 27일 '제2회 전쟁과 인권 심포지엄' 개최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
- 7월~8월 지방 순회 강연

- |                |   |
|----------------|---|
| 7월~12월         | 영상기록팀 증언 교육, 증언 채록 실시                     |
| 9월 6일          | 민간인 학살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국회 귀빈식당)              |
| 10월 22일        | 특별법 제정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br>(65개 시민사회단체, 기독교회관) |
| 11월 5일         | 전국 합동 위령제(여의도 공원)                         |
| 11월 5일~12월 21일 |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유족회 농성(영등포<br>산업선교원)     |

#### ● 2002년

- 1월 20일 '2001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2월 4일 BBC "Kill 'em all" 방영에 즈음한 긴급 기자회견
- 2월 20일 부시 방한 반대 성명서 발표
- 4월 경기도 여주 현장 조사, 증언 채록
- 4월 16일 경남 일대 증언 채록
- 5월 1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면담
- 5월 재소자 학살 및 외신 팸플릿 보도에 대한 성명서 발표
- 7월 4일 전남 진도, 완도, 해남 현장 조사, 증언 채록
- 8월 29일 '2002 한국전쟁 전후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개최
- 8월 29일~9월 30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전국 사회단체 협의회 발족
- 8월 29일~9월 30일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역 목요 캠페인 진행
- 10월 4일 2002 임시총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 위원회'로  
명칭 변경, 회칙 개정
- 11월 7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 촉구 여의도 대회

#### ● 2003년

- 1월 23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차  
집단 진정
- 2월 22일~23일 제1차 제노사이드 월례 토론회
- 2월 27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족 및  
활동가 워크숍
- 2월 27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 돌입

- 2월 28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2차 집단 진정
- 3월 19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1,000인 선언
- 3월 25일 국가 인권위원회에 민간인 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3차 집단 진정  
청와대 앞에서 집회 후, 청와대에 유족 호소문 전달
- 4월 3일 여의도로 농성장 이동 후 대국회 투쟁 선언 기
- 4월 8일 전주 형무소 1,600명 집단 학살에 대한 기
- 5월 2일 시민과 함께 하는 민간인 피학살자 해원굿,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진행
- 5월 6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 면담
- 5월 9일 김천 형무소 집단 학살지 발굴 및 기자회견
- 5월 23일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 특별법 완전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전개
- 5월 29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 6월 6일 농성 100일 성명 "6월 국회는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법을 즉각 제정하라!" 발표
- 6월 17일 2003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중언 대회
- 6월 20일 이병석 의원 규탄 및 114일간의 농성 정리 기자회견  
범국민위 대표단,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 6월 26일 포항 현지에서 '일제 강제동원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위'와 함께 이병석 규탄 집회 진행
- 7월 16일 '국가 인권위원회, 통합 특별법 제정 권고'를 환영하는 성명 발표
- 8월 13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국적 포기 선언 지지 및 과거청산 관련 법안 처리 촉구 성명 발표
- 8월 23일~24일 거창 평화인권 예술제 후원, 참가
- 9월 22일 범국민 위원회 창립 3주년 기념식
- 10월~11월 전국 학살 실태 보강 조사—전남, 전북, 충남, 경남
- 12월 학살 데이터베이스 제작  
학살 지도 CD제작, 배포

### 3. 민간인 학살 관련 사회단체와 유족회 일람

#### 사회단체

| 단체명                   | 전화           | 홈페이지  |
|-----------------------|--------------|---|
| 거제박물관                 | 055-687-6790 | <a href="http://www.kojemuseum.org">http://www.kojemuseum.org</a>   |
| 거창민족예술인총연맹            | 055-644-8025 |   |
|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055-644-8025 |   |
| 고양금정굴공동대책위원회          | 031-967-9944 | <a href="http://haxalgy.jinbo.net">http://haxalgy.jinbo.net</a>   |
| 고양시민회                 | 031-967-9944 | <a href="http://gycc.or.kr">http://gycc.or.kr</a>   |
| 광주인권운동센터              | 062-529-7576 | <a href="http://www.ingwon.org">http://www.ingwon.org</a>   |
| 국제민주연대                | 02-3675-5810 | <a href="http://www.khis.or.kr">http://www.khis.or.kr</a>   |
| 나주문화원                 | 061-332-5115 | <a href="http://www.najuculture.or.kr">http://www.najuculture.or.kr</a>   |
| 나주사랑시민회               | 061-336-9993 | <a href="http://www.najusarang.or.kr">http://www.najusarang.or.kr</a>   |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042-253-8176 | <a href="http://www.cham.or.kr">http://www.cham.or.kr</a>   |
| 미군학살만행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 02-845-0615  | <a href="http://www.koreatruthcommision.org">http://www.koreatruthcommision.org</a>   |
| 민간인학살문제해결을 위한경남지역모임   | 055-250-0172 | <a href="http://report.jinju.or.kr/massacre">http://report.jinju.or.kr/massacre</a>   |
| 민간인학살진상규명 충북대책위       | 043-215-0324 | <a href="http://www.chongjupeace.org/chgenocide/">http://www.chongjupeace.org/chgenocide/</a>   |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02-888-3683  | <a href="http://www.professomet.org/">http://www.professomet.org/</a>   |
| 새사회연대                 | 02-925-0062  | <a href="http://www.newsolidarity.org">http://www.newsolidarity.org</a>   |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 061-651-1530 | <a href="http://www.yosuicc.or.kr">http://www.yosuicc.or.kr</a>   |
| 역사문제연구소               | 02-3672-4191 | <a href="http://www.kistory.or.kr">http://www.kistory.or.kr</a>   |
| 열린사회 희망연대             | 055-247-2073 | <a href="http://hopenews.or.kr">http://hopenews.or.kr</a>   |
| 인권운동사랑방               | 02-741-5363  | <a href="http://www.sarangbang.or.kr">http://www.sarangbang.or.kr</a>   |
|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032-428-2230 | <a href="http://www.spark946.org/bugsboard/region_incheon.html">http://www.spark946.org/bugsboard/region_incheon.html</a>                       |
| 전국역사교사모임              | 02-2631-2913 | <a href="http://okht.njoyschool.net/club/service/cl_main.asp?gid=10000052">http://okht.njoyschool.net/club/service/cl_main.asp?gid=10000052</a> |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063-231-9331 | <a href="http://www.onespark.or.kr">http://www.onespark.or.kr</a>   |

| 단체명                      | 전화           | 홈페이지  |
|--------------------------|--------------|---|
|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063-842-0778 | <a href="http://www.spark946.org/bugsboard/region_jeonbuk.html">http://www.spark946.org/bugsboard/region_jeonbuk.html</a> |
| 제주4·3도민연대                | 064-721-4343 |   |
| 제주4·3범국민대책위원회            | 02-757-4843  | <a href="http://www.cheju43.org/Main.html">http://www.cheju43.org/Main.html</a>   |
| 제주4·3연구소                 | 064-756-4325 | <a href="http://www.jeju43.org">http://www.jeju43.org</a>   |
| 죽이는이야기                   |              | <a href="http://www.genocide.jungbo.net/index.php">http://www.genocide.jungbo.net/index.php</a>                           |
| 지리산와공양민학살사건<br>진상조사위원회   | 055-753-8788 | <a href="http://jirisan.jinju.or.kr">http://jirisan.jinju.or.kr</a>   |
| 진주사랑청년회                  | 055-753-8788 | <a href="http://demojj.wo.to">http://demojj.wo.to</a>   |
| 참여자치거창시민연대               | 055-942-1117 |   |
| 천주교청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 043-215-0324 | <a href="http://www.chongjupeace.org/main.htm">http://www.chongjupeace.org/main.htm</a>                                   |
| 파주시민회                    | 031-946-7600 | <a href="http://www.pajucitizen.co.kr/">http://www.pajucitizen.co.kr/</a>   |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02-711-7292  | <a href="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http://www.spark946.org/bugsboard/lee/index.html</a>           |
| 평화와통일을위한시민연대             | 02-777-5690  | <a href="http://www.peace21.net">http://www.peace21.net</a>   |
| 한국전쟁증미군에의한<br>양민학살경남도대책위 | 055-759-6064 | <a href="http://www.yangmin.or.kr">http://www.yangmin.or.kr</a>   |

## 유족회

| 유족회      | 회장/대표  | 연락처                                    |
|----------|--------|--|
| 강화유족회    | 서영선    | 02-2649-6049, 019-808-6047             |
| 거제유족회    | 서철안    | 055-681-0237, 011-9553-0237            |
| 거창유족회    | 맹판호    | 055-944-4628, 011-488-6760             |
| 거창신원유족회  | 김운섭    | 055-943-0667, 011-415-4135             |
| 경산코발트유족회 | 이태준    | 018-516-7007                           |
| 고양금정굴유족회 | 서병규    | 031-938-4683, 016-240-5717<br>(마임순 총무) |
| 고창유족회    | 천주영 총무 | 011-743-1531                           |
| 고흥유족회    | 유일선    | 031-424-7011, 011-9873-7011            |

| 유족회                      | 회장/대표 | 연락처                                       |
|--------------------------|-------|---|
| 괴산군사리면보련유족회              | 이제관   | 042-836-7279, 011-9828-7279               |
| 나주동창교양민학살사건<br>진상규명추진위원회 |       | 061-332-2263                              |
| 나주봉황유족회                  | 양성일   | 061-331-3206, 011-607-1176                |
| 노근리평화인권연대                | 정구도   | 019-643-3192                              |
| 단양괴개굴희생자대책위원회            | 조태원   | 043-423-7094                              |
| 대구경북유족회(예천)              | 안승규   | 053-985-9157, 016-524-3575                |
| 대구유족회                    | 이광달   | 053-982-1332                              |
| 대전형무소안내학살<br>진상규명유족회     |       | 042-253-8176                              |
| 마산유족회                    | 이만순   |   |
| 문경양민학살피학살자유족회            | 채의진   | 054-541-9039, 011-208-9039                |
| 백조일손유족회                  | 조정배   | 016-630-7300                              |
| 부경유족회                    | 김영숙   | 051-581-7748, 016-371-1136<br>(김희석 집행위원장) |
| 사천조장리유족회                 | 차수태   | 055-854-7303                              |
|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br>피학살자유족회 | 정맹근   | 011-9538-3446                             |
| 산청합양유족회                  | 정재원   | 02-765-4724, 011-244-4343                 |
| 완도유족회                    | 김보희   | 061-552-7321, 011-666-2636                |
| 여수남면학살유족회                | 이춘송   | 051-263-7816                              |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 허명문   | 018-790-2278                              |
| 여순사건 순천유족회               | 장준표   | 061-744-1004, 011-666-2306                |
| 여순사건 구례유족회               | 박찬근   | 061-781-4528, 016-681-4529                |
| 여순사건 광양유족회               |       | 061-762-6222                              |
| 여순사건 보성유족회               | 임상열   |   |
| 여순사건 남해유족회               | 강태용   |   |
| 의령유족회                    | 이재기   | 055-573-1137                              |
| 의산역미군폭격유족회               | 이창근   | 063-831-6581, 011-672-6496                |
| 전주교도소유족회                 | 조병권   | 011-236-3965                              |
| 창녕유족회                    | 이승일   | 055-533-4847                              |

| 유족회           | 회장/대표 | 연락처                        |
|---------------|-------|----------------------------|
| 청도보도연맹유족회     | 박희준   | 054-371-1057               |
| 포항유족회         | 안인석   | 017-539-4752               |
| 함안유족회         | 김차희   |                            |
| 함양도북유족회       | 차용현   | 055-962-5965, 011-488-5965 |
| (사)합평사건희생자유족회 | 정근육   | 061-323-1016, 011-615-3009 |
| 해남군유족회        | 오원록   | 031-422-7454, 011-687-4675 |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기간에  
아무런 법적 절차도 없이 자행된  
민간인 대량 학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무고하게 희생된 피학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전국적인 피해 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적인 공동 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전국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 땅에서 해원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과  
그 유족들의 통한의 50년 세월을 위로하며,  
지금까지도 자행되고 있는 국가 폭력의 망령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인권과 평화가 보장되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 **사업 내역**

- ① 전국 통합 특별법 제정
- ② 피해 실태 조사·연구
- ③ 조직 사업
- ④ 선전·홍보
- ⑤ 학살 데이터베이스, 학살 지도를 통한 정보 공유
- ⑥ 회원 사업
- ⑦ 연대 사업